

대한민국: 1등급

대한민국(한국 혹은 남한)은 성매매와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성인 남녀와 아동의 인신매매에 관여하는 송출국·경유국·목적국이다. 한국 여성들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홍콩, 두바이, 대만, 마카오, 칠레를 포함한 국내외에서 매춘을 강요받고 있다. 한국 여성들은 보통 관광, 취업, 유학 비자로 목적국에 입국하며, 일부는 안마시술소, 살롱, 주점, 식당이나 인터넷 매춘업체를 통해 강제로 매춘에 종사한다. 유흥업소 업주들이나 악성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일부 피해자들은 매춘을 강요받는다. 신체장애나 지적장애를 가진 일부 한국인 남성들이 염전에서 강제 노동을 강요받고 있으며 언어적·신체적 가혹행위, 임금 체불, 장시간 근무, 열악한 근무·생활 조건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 아동들은 온라인을 통한 상업적 성착취에 취약하다. 일부 가출 소녀들은 거처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매춘에 나선다.

중국, 북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기타 아시아 국가, 중동, 남미 출신의 남성과 여성이 한국에서 강제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이들 지역 출신 여성 중 일부는 매춘을 강요받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그 중에서도 특히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출신 근로자는 수천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채무노예로 전락할 취약성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근로자의 상당수를 포함한 약 50만 명의 저숙련 외국인근로자가 어업, 농업, 축산업, 요식업, 제조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일부는 강제노동의 징후를 보이는 근로조건에 직면해 있다. E6-2 호텔·유흥 비자로 입국한—대부분이 필리핀, 중국, 키르기스스탄 출신인—외국인 여성들은 항구와 미군 기지 주변의 유흥업소에서 매춘을 강요받고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빌미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 여성들 중 일부는 한국에 도착한 후에는 매춘이나 강제노동을 강요받는다. 피해자 가족이나 한국 내 범죄조직은 취업을 빌미로 동남아시아 국가의 아동들을 유인하여 한국에 입국한 후에는 매춘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 남성은 베트남, 캄보디아, 몽고, 필리핀에서 아동 성매매 관광에 참가하고 있다. 일부 한국 원양어선 선원들은 키리바시에서 상업적 아동 성매매에 연루됐다. 한국은 피지를 비롯한 그 밖의 다른 태평양 항구로 출항하는 원양어선에서 강제노동을 강요받는 동남아시아 선원들이 거처가는 경유국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보고 대상 기간 동안, 정부는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신고가 접수된 457건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실시하여 그 중 167건을 기소했으며 피고의 수는 알 수 없었다. 또한, 정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는 성적 착취 인신매매 사건 14건과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사건 53건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정부는 농축산업 부문에 대해 최초로 노동력 착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여전히 ‘인신매매’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침이 부재하며 법집행 과정에서 잠재적인 피해자인 일부 성매매 여성이나 외국인근로자를 처벌했다.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안:

형법에 근거하여 인신매매 사범을 수사하고 기소하며 유죄를 확정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법집행 공무원, 검찰, 사법 공무원으로 하여금 형법의 정의에 따라—약취, 매매, 강제력 혹은 감금 여부와 상관없이—‘인신매매’를 해석하고 피해자를 비자 규정 위반자나 자의로 범행에 동참한 자로 취급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국내외에서 아동 성매매를 하는 내국인들을 사전예방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표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침을 이용하여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개인, 장애인 남성, 모든 비자 범주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사전예방적으로 식별해야 한다. 고용계약서를 확인하고 대상 업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부에서 발급한 호텔·유흥 비자의 인신매매에 대한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신매매 사건들을 사전예방적으로 수사하고 관련자를 기소해야 한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일선에서 잠재적인 인신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출입국 규정을 집행하는 절차를 표준화하고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매춘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여성의 출입국 형태를 감독하고 탐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신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법원의 형량에 있어서 일관성을 제고해야 한다. 지자체 공무원 및 실무자를 포함한 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의 실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확대해야 한다. 한국 국적 원양어선에서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사범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지속해야 한다. 성적 착취 및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금전적 합의를 도출하는 비율을 낮춰야 한다. 2000년 유엔 인신매매방지협약의 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사법 처리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사법 처리 노력을 지속했다. 형법 제31장은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금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사범을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량은 강간 등 다른 중범죄의 형량에 준하는 엄격한 수준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보다 형량이 낮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04년), 근로기준법,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여 대부분의 인신매매 사범을 처벌했다. 정부는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신고가 접수된 457건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형법 제31장을 근거로 성적 착취 인신매매 사건 4건을 기소하여 3건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정부는 다른 법률을 근거로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사건 125건을 포함하여 163건의 사건을 기소했으며 성적 착취 인신매매 사건 11건(2013년의 경우 61건)과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사건 53건(2013년의 경우 11건)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유죄가 확정된 인신매매 피의자 대부분이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및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지만 상당수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검찰과 경찰은 출입국관리규정의 일관성 없는 적용과 유죄가 확정된 사범의 실제 형량에 불만을 제기했다. 정부는 수백 명의 내국인 장애인 남성들이 염전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2014년 3월 사건을 계기로 특별수사팀을 설치하여 전국 854개 염전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40명의 염전 업주 및 중개인에 대해 다양한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확정했다. 그 중 절반 이상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국 국적 원양어선에서 2012년에 발생한 노동력 착취 사건은 보고 대상 기간 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검사, 판사, 법집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방지, 피해자 식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일련의 교육과정과 세미나를 연중 실시했다. 인신매매 범죄에 공무원이 연루되어 수사, 기소 혹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정부에 의해 보고된 바 없다.

피해자 보호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정부는 외국인 성적 착취 인신매매 피해자 58명(2013년의 경우 36명)을 식별하여 지원을 제공했다.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에 관한 통계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입수가 불가능했다. 정부는 2013년에 성적 착취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침을 제정했으나 상당수 법집행 공무원들은 그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식별 지침은 여전히 부재한 상태였다. 여성가족부는 성적 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와 기타 범죄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91개 시설을 계속해서 지원했다. 고용노동부는 38개 외국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그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했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일부 포함된 수천 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상담, 교육, 직업훈련, 숙소를 제공받았다. 경찰청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여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성매매에 연루된 여성을 조사할 때 계속해서 사회복지사를 동석시켰다. 법률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 단속에 적발된 성매매 여성이나 외국인근로자는 인신매매 식별 지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 수강명령, 송환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인신매매에 취약한 두 계층인 외국인 배우자와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지원센터 네트워크를 운영했다. 정부는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가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어려움에 처하거나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적 대안을 제공했다.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수사와 기소에 협조하도록 권장하고자 G-1 비자를 발급하고 최장 1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이 수단을 활용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예방 노력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정부는 시민사회와 협력하여—2004년에 최초로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의 시행 1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공익광고 캠페인과 기타 지원 활동 및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인신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정부는 인신매매에 대한 취약성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E6-2 호텔·유흥 비자에 관련된 위법 사항과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실태에 관해 두 차례의 조사를 실시했다. E6 비자에 관한 조사 결과 일부 여성이 성적 착취와

메춘을 강요받고 채무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 비자 유형에 대해 발급과 감독 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해 13개국어를 지원하는 상담전화를 계속해서 운영했으며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들을 위한 상담 전화를 계속해서 운영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및 선박 관계자 961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선원의 인권 보호와 노동기본권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정부는 인신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인권증진행동계획에 인신매매 방지 대책을 포함시켰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연중 정기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청은 상업적 성행위에 대한 수요를 근절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아동 성매매를 조장하는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차단했다. 한국 남성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군도 내 아동 성매매 관광의 수요자로 남아 있었으며, 이러한 관광들은 주로 여행사 단위 골프 그룹 투어나 사업 출장등을 빌미로 이루어졌다. 정부는 아동 성매매 관광에 관한 경고문을 계속해서 게재했으나 내국인 성매매 관광객을 기소하거나 유죄를 확정된 사례는 전혀 없었다. 정부는 해외 평화유지군 활동에 참가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출국 전 인신매매 방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정부는 외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은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당사국으로 가입하지 않았지만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